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기관 인권교육 권고 또는 협의〉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86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승원 · 이기현 · 김현정 · 이원택 · 조계원 · 이건태
박균택 · 박지원 · 서영교 · 박해철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 의안번호 : 668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 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

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
② ~ ⑦ (생략) <u><신설></u>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¹⁾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의 하나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제26조²⁾는 인권교육에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인권교육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대학교의 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표-2] 인권교육 관련 협의·권고 내용(제26조)

대상 기관	협의 또는 권고 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협의
대학교의 장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협의
국방부장관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 협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	인권에 관한 연구 요청 또는 공동 연구 협의
평생교육기관의 장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 포함 권고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인권교육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3]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검찰	118	97	73	77	80
경찰	1,192	1,259	1,483	1,518	1,354
계	1,310	1,356	1,556	1,595	1,434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표-4] 2024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2024. 11. 기준)

(단위: 건, %)

합계	검찰	경찰	국가 정보원	군	중앙 행정 기관	입법 기관	사법 기관	기타 국가 기관
7,582	80 (1.1)	1,354 (17.9)	8 (0.1)	318 (4.2)	296 (3.9)	12 (0.2)	59 (0.8)	20 (0.3)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교정 시설	다수인 보호 시설	출입국 관리 기관	의료 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기타
304 (4.0)	252 (3.3)	827 (10.9)	2,587 (34.1)	1,183 (15.6)	120 (1.6)	57 (0.7)	56 (0.7)	49 (0.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수사업무종사자 등의 인권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법률상 근거에 따라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인권교육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인권교육³⁾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피의자·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개발·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점, 현행법상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의·권고 기능이 제도화되어 운영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해양경찰청훈령) 등에 따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 경찰관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1조(수사인권교육) ① 경찰청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13조(인권교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인권침해 사례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의 경찰활동 시 인권보호 의무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법문 표현상 ‘그’ 앞에 ‘그’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그’가 의미하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017

4) 그 밖에 주술관계 명확화 등을 포함한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⑧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⑧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사기관의 장등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